보이스피싱 공익신고를 위한 법제 검토

A Study on Review of legislation for Voice Phishing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박 세 훈(Park, Se Hun)*

ABSTRACT

The scope of the Act shall be suspended from Article 3 of the same Act only if a criminal reporter, etc. or his/her relatives are likely to be kept. Such efforts to secure incentives for those involved in the crime can in fact be seen through legislative review that there are no strong incentives.

Voice Phishing, a fraudulent crime using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is sufficient to be the main target of vertical and hierarchical Voice Phishing by combining Korea's fast Internet network and smartphones used by all citizens. Voice Phishing has led to the fact that major targets of crimes are indiscriminately and indiscriminately Voice Phishing using electronic communication, regardless of gender, children, and adults, and the damage caused by it has been deprived of not only material damage but also mental damage.

However, as discussed earlier, the prevention of Voice Phishing has been a warning or warning to individuals to be careful, and in reality, it has become an opportunity to review the limitations of various policy and multilateral comprehensive measures.

It is seen as urgent as an institutional supplement to overcome the "at least critical point of life," which is the basis of life, in terms of personal protection or compensation that allows the participant of Voice Phishing, especially the general policy, to play a role as a Whistleblower. The study was conducted only when it was beyond the critical point, but it was concerned that the location of Voice Phishing crimes, organizers, fraud methods, fraudulent associates, recruitment, and collection measures would be the only solution.

Key words: Voice Phishing, whistleblowers, Voice Phishing obsolescence, at least the critical point of life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Ⅰ. 서론

2019년 10월 반가운 소식이 날아든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우리나라는 141개국 중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13위를 기록해 주요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라는 평가였다.[1] 이에 2020년의 평가는 어떠한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20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우리나라는 2019년보다 5단계 상향조정된 23위로서 총 63개국 중에서 상위의 결과라고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2] 국제경영개발대원(IMD)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성, 정부 효율성, 기업효율성과 인프라의 개선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전년보다 상향한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듯 고도의 경제성장을 거쳐 세계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보통신산업에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의 확보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하지만 정보통신산업의 발달과 기업이 일 잘 할 수 있는 경제성이 담보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범죄들이 발생하고 발전되어가는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전자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이하 '보이스피싱' 이라 한다)은 우리나라의 빠른 인터넷망과 모든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결합으로 수직적·계층적으로 조직화한 보이스피싱의 주요대상이 되기 충분하다. 보이스피싱은 범죄의 주요대상이 성별·아이 어른을 막론하고 무분별·무차별적으로 전자통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어 그에 따른 피해는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삶의 의지까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인터넷 전화나 국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으로 속여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출석요구, 거짓 납치사고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2009년에 크게 대두[3]되었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변형되어 발전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4] 보장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5] 피

1) 기획재정부,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보도자료, 2019.10.9.(확인일: 2021. 3.5.)
2) 기획재정부, "2020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보도자료, 2020.06.16.(확인일: 2021.3.5.)
3) 윤해성·곽대경,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22면 이하.
4) 헌법재판소는 1997. 1. 16.선고 90헌마110등 헌법소원심판 결정을 통해 헌법 규범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결정문 중 합헌의견을 제시한 4인의 재판관(재판관 김문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의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그 근거를 밝히고 있다.
5)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해자에 대한 보호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바보인 것 마냥[6]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유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7]을 통해 앞서 제시한 구분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렇듯 보이스피싱의 사기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지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검토하고, 보이스피싱 과정이 조직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제로 적발이 매우 어렵고 이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의 가담한 자에 대한 공익신고자의 역할을 할 방안을 마련하고, 형법에서 범죄가담에 대한 감경으로 바라보는 것에 비견하여, 보이스피싱 가담한 자에 대한 공익신고자로서의 공익적 행위에 대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할 방안과 제도적 유인책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Ⅱ.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폐쇄성

1. 보이스피싱의 의의 및 대응 형태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8]는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이시피싱은 전통적인 전화기나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의 금융정보나 신상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것으로 음성인 Voice와 개인정보인 Private Data에 낚시인 Fishing의 합성어로서 보이스피싱 Voice Phishing이 되었으며,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을 통한 사기의 총칭하는 의미로써 사용되고 있을 뿐, 실제 법령에서 직접 보이스피싱을 법률용어로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개인을 기망한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앞서 논의한 보이스피싱으로 규정하고 있다.[9]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

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고, 헌법 제30조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헌법 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국가는 전자통신을 이용한 사기인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뿐만이 아닌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6) 정태성, “‘Phishing(피싱)’에 걸려드는 바보들”, NewsQuest, 2020.8.11.(확인일: 2021.3.5.)

7) 이병우·서준배·김민호·강동필, 「사기의 세계」, 박영사, 2020. 61면 이하에서 청소년기, 성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주요 사기 피해사례 참조.

8)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서 전기통신수단으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적용되면 사기 수단에 따른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또는 공갈죄인 제350조 등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범죄는 전형적으로 해외에 범죄단 본부 및 콜센터를 두고 국내에 인출팀 환전・송금팀, 계죄모집팀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조직적・지능형 범죄로서 특징이 있었으며[10], 현재는 IT기술을 이용하여 주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형태로서 더욱 치밀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서 입법화되었지만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고 있고,[11]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전자기기 및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방안이 제시[12]되고 있다.

APEC 인공지능 보고서[13]를 발간하면서 AI 신뢰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으로 AI를 통해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을 구축하도록 독려하고 있을 정도로 디지털・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가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신뢰기반의 디지털・통신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사기범죄에 비해 중대한 범죄로서 인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2. 보이스피싱의 폐쇄성

코로나19[14]가 야기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비대면의 일상화로 꼽는다. 비대면의 일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96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10) 정부 관계기관 합동 TF,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2.1.31., 1면.

11) 윤혜성・김유근, 「보이스피싱 피해유형별 구체적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 대검찰청, 2017.

12) 이승용・이주락, "빅데이터와 FDS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측 방법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20.; 김혜진, "웹스크래핑과 공간 클러스터링 기술을 활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사기법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20.; 장광호・김희두, "비정형 데이터 네트워크 기법의 수사 활용 연구: 보이스피싱 대응 수사 지원을 중심으로",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2020.; 정웅, "보이스피싱 범죄추세와 수사 대응체제의 발전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0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3)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2020.11.19.), "AI in APEC : Overview of The State of AI in APEC Economies and The Enabling Initiatives That Will Further Drive Adoption" 19면.(확인일: 2021.3.5.)

상화는 사람의 개입 최소화를 반영한 환경의 변화를 촉진하고 여러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충분하였다. 비대면 일상화에 따른 디지털화, 자동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이로 인한 효율을 경험한 개인 및 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자동화서비스, 시스템의 이용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15] 급속한 비대면 환경변화의 근저에는 개인 또는 혼자 있는 환경변화라고 인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이 혼자 있는 환경이 오래 지속되면서 보이스피싱하기 좋은 상황이 되었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비대면 환경에 따른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16]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날로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을 응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 예측하거나 가짜음성(녹음・합성) 등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한다고[17] 하고 있지만 적극적 대응하기에는 기술개발과 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3. 보이스피싱의 범죄 폐쇄성에 따른 범죄파악의 어려움

통신금융사기로인한 이용계좌에 대한 유동수 의원실[18]에서 제공한 금융회사별 사기 이용계좌는 통상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인 전화사기나 대출 빙자 형 금융사기 등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약 7만8천여 개로 일일로 계산하면 매일 215개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19]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수를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6만6천91개), 신한은행(4만6천735개), 우리은행(4만288개), 기업은행(3만4천30개) 순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이렇듯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원천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기에는 실로 역부족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의 범죄구조는 유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인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에서는 총책을 필두로 콜센터-계좌개설팀-현금인출팀-환전・송전팀으로 크게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고 하겠다.[20] 총책은 전체적인 범죄를 조율하고 수익을 분배

14) 정부는 '신종 코로나비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19'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번 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결정하였지만, 국민들에게 '코로나'가 익숙해서 '코로나19'로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코비드라고 쓰게 되면 국민들이 이번 감염증을 마치 새로운 질환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다.(정부는 '코비드-19' 대신 왜 '코로나19'로 정했을까, 한겨레, 2020.2.12. 기사(확인일: 2021.3.5.).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 이후 시대의 ICT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2020.12., 1면.

16) 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부・금융위・경찰청, "비대면 시대, 보이시피싱・스미싱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 추진", 2021.2.3.

17) 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부・금융위・경찰청, "비대면 시대, 보이시피싱・스미싱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 추진", 2021.2.3. 4면.

18) 금융회사별 사기이용계좌 현황 유동수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2020.10.22. 기사)

19)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원 유동수 블로그 2020.10.15(확인일: 2021.3.3.)

20) 조호대, "보이스피싱 발생 및 대응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 178면.

하며 철저하게 점조직으로서 활동하고 있어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대부분 중국 등 해외에 기반을 두어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콜센터 전담으로 두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을 정상적인 계좌로 이체되면 추적의 위험이 있으므로 명의만 빌려서 하는 일명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기 때문에 타인의 계좌를 개설할 사람을 포획한다. 여기에서도 계좌개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 만남이 있을 뿐이어서 어떠한 한 사람을 특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현금인출팀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간관리자 또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들 관계에서도 외부로 드러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님이 파악된다. 환전 및 송금에서도 피해금이 성공적으로 인출되면 불법 환전업자를 통한 자금세탁으로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중간관리자 또는 총책에게 피해 금액이 그대로 송금되는 구조로서, 환전이나 송금에서도 소수 몇 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외부로 드러날 수 없는 특징이 갖고 있다.

현재 이러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구성 구조를 뛰어넘어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가담경로가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21] 가담경로에 있어서 구직사이트를 통한 가담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SNS를 통한 가담이 뒤를 이었다. 이것으로 보아도 다양한 사람들이 손쉽게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인터넷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손쉽게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유의미한 연구결과라 하겠다. 달리 말하면, 전달책에 대한 손쉬운 가담 인원의 확보로 보이스피싱의 총책-콜센터-계좌개설팀-현금인출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의 노출이 더욱더 안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출범 이후에도 보이스피싱의 척결은 어려워 보인다. 중요한 이유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폐쇄적이고 점조직의 조직으로 구성하여 보이스피싱 팀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제 내부에 있는 자 이외에는 조직의 규모나 위치 등 보이스피싱 팀을 특정할 만한 정보를 확인할 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각 정부 부처별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부분 정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금융위원회는 전자통신금융사기의 사전적 피해방지이기보다는 사후적인 정책이 더 많다. 일례로 금융기관, 사법기관 조직명칭을 사칭하여 오는 전화는 받지 말라라던지 하는 보이스피싱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의 대응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22] 이것은 사실상의 보

21) 홍동규, 홍순민, 김한결,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가담경로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20권 제1호, 2020.3, 114면.

22) 기획재정부, "보이스피싱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2021.1.15.(확인일: 2021.3.5)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의 소개문을 게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도 개인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개인 차원에서의 주의와 노력도 필요한데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사기 예방 서비스를 안내해드리

이스피싱은 범죄의 발현에서부터 보이스피싱 팀의 구성, 보이스피싱의 실행에까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현단계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범죄의 증거 수집이나 범죄의 실행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은밀성, 점조직 성은 자기들만의 그룹을 만들고 운영된다는 점에서 내부에 관련 있는 자의 신고가 없이는 외부로 표출될 방법이 현재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범죄의 가담에 있는 자가 범죄자 그룹의 문제를 외부로 표출하여 사법기관에 알린다는 것은 신고자의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며, 자신이나 자신 주변의 가족들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고화된 조직의 운영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자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 방법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Ⅲ. 보이스피싱의 범죄 체계 속 내부 공익신고자의 중요성

1. 내부 공익신고자의 역할의 중요성과 공익침해행위

보이스피싱의 조직은 외부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전문성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비대면을 통해 은밀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점조직으로서 활동하는 특징 등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는 자 만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신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기획·운영되어져 왔다. 그렇기에 내부 공익신고자로서 보이스피싱의 가담하거나 연루된 자에 대한 공익신고자로서의 유인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일반적인 유인책으로서 딱히 제도적으로 구비된 것이 현재로서는 없다. 피해자, 주변인의 신고나 구조금은 마련되어 있을 뿐 보이스피싱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고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에서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이

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지연인출·이체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 출금·이체를 30분간 지연시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연이체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할 때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돈을 송금한 후 사기인 것을 인지하더라도, 지연 시간 내 이체 취소가 가능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는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미지정 계좌로는 1일 최대 1백만 원의 금액만 송금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피싱 금액의 재정환수와는 대상이 다르다.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개별적 입법목적을 검토하여 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제1조에서 규정 하고 있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를 제1조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목적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부패방지, 공익침해행위, 부정 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와 같이 규제의 목적과 대상이 상이하고 개별 법률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실질적인 권익보장에 있다고 하겠다.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죄 내부의 있는 자가 공익신고자의 역할로 국민의 생활안전과 신뢰인프라를 침해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23]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금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 위반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대폭 확대시켰다.[24]

2. 보이스피싱 공익신고자의 보호 · 보장

가.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제17300호) 검토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제17300호)는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182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2011년 9월 첫 시행 당시 180개에서 467개로 대폭 늘어났다.[25] 공익신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26]는 수사의 단서를 제

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공익침해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4) 국민권익위원회, “불법촬영・직장 내 성희롱 등 신고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다”, 보도자료, 2020. 11.20. 2면.

25)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변동은 제정시(2011.9.30.) 180개에서 (2015.7.24.) 279개로 (2018.5.1.) 284개에서 공익침해행위를 대폭 추가해 (2020.11.20.) 467개로 확대되었다.

26)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공익신고를 정의하고 있다.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

공할 수 있는 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절차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알리는 것을 통상 정의하고 있는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고 강행규정도 두고 있다. 구체적인 보장으로는 비밀보장으로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고, 공익신고로 인해 신고자나 가족의 신변에 위협이 있으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조치로서 공익신고로 인해 파면, 징계, 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를 받았거나 이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실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구조금 지원하며,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나 행정처분 감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나. 보이스피싱 내부 가담자의 공익신고자 유인책 검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자를 공익신고자로서 역할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공익신고 보호・보상 이상으로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적인 보호・보상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신고자 보호에 있어서 현행의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책임감면과 신변보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책임감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으로는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신변호호(동법 13조)에 있어서는 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변호호 조치를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의 신변보호에 있어서 경찰관서의 장의 판단이 중요한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만 규정되어 있지 후속조치로서 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강행규정의 입법이 미비되어 있어 향후 입법적 과제로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절차적으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에서 후속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후단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판단의 주체로서 규정하고 있어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판단하기에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할 당할 경우가 있는 경우에”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구조로 입법화 되어 있으며,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어, 공익신고자가 원하면 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추어 신변보호의 범위 및 내용상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법률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자들로부터의 신변보호는 책임감면이 뒤에서 논의할 보상보다도 본인과 주변 가족의 신체의 안전한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인바 이에 대한 강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변보호 선제적으로 담보되었다면, 다음으로 강력한 유인책으로서 신고자에 대한 보상의 검토가 필요하다. 보상금(동법 제26조)과 포상금(동법 제26조의2)을 두고 있으니 현재 논의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한 보상·포상을 논의할 때의 지급 기준을 검토하여 보면, 신고자 보상금의 지급사유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로서 신고자에 한해서 최대 상한을 30억으로 하고 있으며,[27] 신고자 보상금의 지급사유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직권으로 전체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 상한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8] 동법 제26조에서 보상금을 보다 자세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그간에 보상금 상향 및 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다.[29]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의 죄질에 있어서 무차별적 신뢰인프라의 파괴를 가져오는 심각성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및 범죄 예방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자가 공익신고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신고할 마음을 먹기 위한 임계점을 확보하고 그 임계점을 상향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중요한 과제다. 금번 경찰청에 설치되는 국가수사본부의 출범 이후 첫 기획 수사 대상을 사기로 정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30] 2020년에 경찰에 신고된 사기 범죄가 35만건에 달하고 있어, 2021년 2월부터 6월말까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 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하고 있어 사기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기에 국가수사본부의 첫 기획 수사로서 설정된 것이라 하겠다.[31]

---

27)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신고 보상·포상·구조금 안내'(확인일: 2021.3.5.)

28) 물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에서 구조금의 규정을 두고 있어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고로 인해 이사비, 치료비, 원상회복 관련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실비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의미있는 규정이라고 하겠지만, 현재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가담자를 공익신고자로 유인하기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클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29) 박세훈, "내부고발자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2013.; 황지태·이천현·힘정호,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159면, 강문수, 「내부신고자 보상-보호체계 일원화등 발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71면 이하.

30) 한겨레, "국가수사본부, 출범 첫 타겟은 '사기범'", 2021.1.31.(확인일: 2021.3.5.)

31) 전화금융사기는 경찰청에 5명 규모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숙주 역할을 하며 은밀하게 운영되는 일명 '콜센터'를 추적해 총책 등 상선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각 경찰서 지능팀·경제팀·강력팀은 현금 수거책과 인출책 등 조직원을 검거하는 데 주력한다고 하고 있다.(한겨레 앞의 기사 하단)

하지만,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여러 대응책을 그간 무수하게 제시하였지만 앞선 사기신고 통계에서 보듯이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가담자를 공익신고자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보상금의 지급일 것인데 현재 30억이 최대 상한금액으로서 결정되어져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게 하거나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현행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보상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보이스피싱의 조직규모-콜센터-수집책에 이르기까지 어느 범위에서 척결해야지만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올지에 대한 검토가 없었으며, 이를 산정하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범죄의 규모나 위치, 연락책 등을 파악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자에 대한 공익신고자로서 부응하기 위한 보상금 절차는 미비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Ⅳ. 결론

범죄신고자에 대한 정부의 입법적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2011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하여 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자발적인 범죄신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로부터 범죄신고자를 강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고의 효과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신고를 유도하거나, 강제하기에는 어려울 것 이다. 이러한 신고의 주체를 보면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범죄[32]를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으로 알 수 있다. 범죄신고에 있어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3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제1항에서 특정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1. "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매죄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에 대해 범죄신고등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어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이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법 제3조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렇듯 범죄에 가담한 자에 대한 유인책을 확보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은 사실 입법적 검토를 통해서도 강한 유인책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발달과 전자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은 우리나라의 빠른 인터넷망과 모든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결합으로 수직적·계층적으로 조직화한 보이스피싱의 주요대상이 되기 충분하다. 보이스피싱은 범죄의 주요대상이 성별·아이 어른을 막론하고 무분별·무차별적으로 전자통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어 그에 따른 피해는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삶의 의지까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보이스피싱은 “신뢰인프라에 대한 무차별적인 파괴”라고 정의내리고 싶다.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인터넷 전화나 국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으로 속여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출석요구, 거짓 납치사고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되어져 왔으며, 금번 국가수사본부의 첫 기획수사로서 정해진 근저에는 앞서 이러한 사회 신뢰인프라의 무차별적 파괴에 따른 것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앞서 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간의 보이스피싱의 방지대책은 개인이 조심하라는 경고나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개인이 주의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에 당하여 어디다 하소연 할 수 도 없는 광경을 자주 목도하게 되면서 여러 정책적·다부처적 종합대책의 한계를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자 또는 보이스피싱에서 중요역할을 한 자가 공익신고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변보호나 보상금에 있어서 삶의 근간이 되는 ‘최소한 삶의 임계점’을 넘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인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임계점을 넘어서야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치, 조직원, 사기방법, 사기연루자, 모집책, 수거책 등을 한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본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여전히, 우리의 신고시스템은 가담자의 자발적 신고를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고, ‘최소한 삶의 임계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입법방향이라 하겠다. 신뢰인프라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분절화·비대면사회로 고착화 되면서 ‘신뢰인프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한 가담의 정도, 가당 정도에 따른 ‘삶의 임계점’ 확보를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지며, 입법목적이나 보호 범위 등 보이스피싱을 다시 새롭게 보고 내부에서 공익신고자가 나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혜진, “웹스크래핑과 공간 클러스터링 기술을 활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사기법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20.

강문수, 「내부신고자 보상-보호체계 일원화등 발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 이후 시대의 ICT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2020.12.

박세훈, “내부고발자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2013.

이병우・서준배・김민호・강동필, 「사기의 세계」, 박영사, 2020.

이승용・이주락, “빅데이터와 FDS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측 방법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20.

윤해성・곽대경,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윤혜성・김유근, 「보이스피싱 피해유형별 구체적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 대검찰청, 2017.

장광호・김희두, “비정형 데이터 네트워크 기법의 수사 활용 연구: 보이스피싱 대응 수사 지원을 중심으로”,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2020.

정웅, “보이스피싱 범죄추세와 수사 대응체제의 발전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0.

조호대, “보이스피싱 발생 및 대응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

황지태・이천현・힘정호,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홍동규, 홍순민, 김한결,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가담경로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20권 제1호, 2020.3.

국민권익위원회, “불법촬영・직장 내 성희롱 등 신고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다”, 보도자료, 2020. 11.20. 2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신고 보상・포상・구조금 안내’(확인일: 2021.3.5.)

기획재정부,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보도자료, 2019.10.9.(확인일: 2021. 3.5.)

기획재정부, “2020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보도자료, 2020.06.16.(확인일: 2021.3.5.)

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부・금융위・경찰청, “비대면 시대, 보이시피싱・스미싱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 추진”, 2021.2.3.

유동수 의원 블로그(https://blog.naver.com/newds61)(확인일: 2021.3.5.)

정부 관계기관 합동 TF,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2.1.31.

정태성, “‘Phishing(피싱)’에 걸려드는 바보들”, NewsQuest, 2020.8.11.(확인일: 2021.3.5.)

한겨레, 정부는 ‘코비드-19’ 대신 왜 ‘코로나19’로 정했을까, 2020.2.12. 기사(확인일: 2021.3.5.).

한겨레, “국가수사본부, 출범 첫 타겟은 ‘사기범’”, 2021.1.31.(확인일: 2021.3.5.)

투고일자 : 2021. 03. 07
수정일자 : 2021. 03. 27
게재일자 : 2021. 03. 31

<국문초록>

보이스피싱 공익신고자를 위한 법제 검토

박 세 훈

범죄신고자에 대한 정부의 입법적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2011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하여 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자발적인 범죄신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로부터 범죄신고자를 강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고의 효과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신고를 유도하거나, 강제하기에는 어려울 것 이다. 이러한 신고의 주체를 보면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을 협조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으로 알 수 있다. 범죄신고에 있어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에 대해 범죄신고등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어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이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법 제3조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렇듯 범죄에 가담한 자에 대한 유인책을 확보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은 사실 입법적 검토를 통해서도 강한 유인책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발달과 전자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은 우리나라의 빠른 인터넷망과 모든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결합으로 수직적·계층적으로 조직화한 보이스피싱의 주요대상이 되기 충분하다. 보이스피싱은 범죄의 주요대상이 성별·아이 어른을 막론하고 무분별·무차별적으로 전자통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어 그에 따른 피해는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삶의 의지까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보이스피싱은 신뢰인프라에 대한 무차별적인 파괴라고 정의내리고 싶다.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인터넷 전화나 국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으로 속여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출석요구, 거짓 납치사고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되어져 왔으며, 금번 국가수사본부의 첫 기획수사로서 정해진 근저에는 앞서 이러한 사회 신뢰인프라의 무차별적 파괴에 따른 것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앞서 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간의 보이스피싱의 방지대책은 개인이 조심하라는 경고나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개인이 주의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에 당하여 어디다 하소연 할 수 도 없는 광경을 자주 목도하게 되면서 여러 정책적・다부처적 종합대책의 한계를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이스피싱의 가담한 자, 특히 총책이 중요역할을 한 자의 공익신고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변보호나 보상금에 있어서 삶의 근간이 되는 '최소한 삶의 임계점'을 넘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인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임계점을 넘어서야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치, 조직원, 사기방법, 사기연루자, 모집책, 수거책 등을 한번에 일망타진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본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여전히, 우리의 신고시스템은 가담자의 자발적 신고를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고, '최소한 삶의 임계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입법방향이 될 것이라 보여진다. 신뢰인프라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분절화・비대면사회로 고착회 되면서 '신뢰인프라'가 기초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라 판단되며,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한 가담의 정도, 가당 정도에 따른 '삶의 임계점' 확보를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지며, 입법목적이나 보호 범위 등 보이스피싱을 다시 새롭게 보고 내부에서 공익신고자가 나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주제어: 보이스피싱, 공익신고자, 보이스피싱 폐쇄성, 최소한 삶의 임계점